

18世紀英國의 地主와 農業⁽¹⁾

金宗炫

.....<目次>.....

- I. 序言
- II. 地主層의 構造
- III. 農村構造의 變化와 大所領의 成長
- IV. 農業改良에 있어서의 地主層의 役割

I. 序言

從來 英國의 第2次 農業革命에 關한 研究는 18世紀後半으로부터 19世紀初頭까지의 時期에 集中되어 18世紀前半에 關해서는 반드시 充分한 檢討가 行해졌다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은 이 時期의 史料의 性格에 의하는 것이며 18世紀中葉以來 大規模의 議會인클로주어(enclosure)가 集中的으로 이루워지고 이것이 進步的인 地主에 의한 改良農法의 普及을 容易하게 하고 農業技術의 큰 進步를 可能하게 했다고 생각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17世紀末부터 18世紀前半에 걸친 土地所有에 關한 Habakkuk 教授의 先驅의 研究⁽²⁾ 以來 農業發展에 있어서 18世紀前半이 가지는 意義가 漸次 重要視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所領(estate) 諸記錄이 라든가 其他 農業經營關係諸史料의 研究 그리고 인클로주어에 關한 詳細한 地域의 個別研究에 의해서 18世紀全般의 農業發展에 關한 새로운局面이明白히 되고 있는 것이다.

그 結果 最近에는 第2次 農業革命 또는 agrarian revolution과 區別되는 agricultural revolution이라는 術語로서 表現되고 있는 農業上의 變革을 적어도 17世紀末로부터 19世紀前半에까지 걸치는 長期的過程으로 보고 그 過程에 있어서 議會인클로주어는 이 變革에 加速度를 주었음에 不過하다고 하는 見解가 漸次 有力해지고 있다. 따라서 從來 그 原因이 主로 議會인클로주어에 歸屬되고 있던 農村構造의 急速한 變化와 그에 따른 大農場의 增大 및 小農의 衰退 資本家的 農業經營者의 發展 四種輪作을 包含한 新農業技術의 普及은 時代를 邇及해서 적어도 17世紀末以後 漸次的으로 그 容姿를 나타내온 것이라

(1) 本稿는 日本의 社會經濟史學會雜誌『社會經濟史學』第29卷 第4·5號(1964年4月)에掲載된 筆者の拙稿를 加筆한 것이다.

(2) H.J. Habakkuk, "English Landownership, 1780—1740," *Economic History Review*, 1st Series, Vol. X, 1940.

고 생각하게되고 또 18世紀의 農業發展의 要因으로서는 農產物價格의 變動 工業化 人口增加 市場의 擴大등이 重視되고 있다. 그와 함께 議會인 클로이어 以前의 地主의 所領增大가 重要한 意味를 가지게되고 他面 改良農業의 先驅者로서 18世紀의 農業發展에 決定的役割을 했다고 말해지는 Coke 와 Townshend 와 같은 著名한 地主들에 對한 從來의 評價도 修正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本稿는 最近數年에 걸쳐서 18世紀에 있어서의 農業發展의 連續性을 積極적으로 主張해서 活潑한 研究活動을 展開하고 있는 G. E. Mingay 博士의 諸研究⁽³⁾를 中心으로 18世紀 英國의 地主層과 그 所領의 增大 그리고 農業發展에 있어서 그들이 한 機能에 關해서 簡單한 展望을 試行한 것이다.

II. 地主層의 構造

18世紀英國의 土地所有者는 그것을 社會的身分과 政治的機能으로 본다면 貴族(peers) 젠트리(gentry) 自由保有農(free holders)으로 構成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分類는 반드시 明確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것을 經濟的機能으로 본다면 地主(landlords)와 自作農(owner-occupiers)이라는 두개의 보다 明確한 階層으로匾分된다. 또 地主는 그 收入規模에 의해서 18世紀末에 있어서 적어도 年 £ 5,000 以上의 所領收入을 가지는 大地主와 그以下の 所領收入을 가지는 小地主 즉 젠트리와로 匤分된다. 1790年에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스(Wales)에 있어서 大地主는 約 400家族 그 平均 收入은 約 £ 10,000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所領은 總計 約 600萬 에이커(acre)로서 總耕地面積의 約 5分의 1(20~25%)를 占하고 있었다. 大地主層 内部에서도 收入格差는 커서 最低 £ 5,000로부터 最高는 Bedford, Bridgewater, Devonshire, Northumberland 諸公이라든가 Egremont 家 Shelburne 家 Rockingham 家의 그것과 같이 £ 40,000乃至 £ 50,000에까지 達하고 있다. 大貴族은 거의 大部分이 이 範疇에 屬하고 있다.

한편 젠트리에 있어서도 富의 格差는 크다. 즉 若干의 騎士(knight)와 稱號(title)가 없는 젠틀맨(gentleman)을 包含해서 主로 准男爵(baronet)으로서 構成되는 富裕한 젠트리는 £ 3,000乃至 £ 5,000의 年收를 가지고 總數 約 700乃至 800家族이었다. 다음에는 年

(3) G.E. Mingay, English Landed Society in the Eighteenth Century, London, 1963, do., "The Large Estate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Contributions and Communications,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conomic History, Stockholm, August 1960; do., "The 'Agricultural Revolution' in English History: A Reconsideration," *Agricultural History*, Vol. 37, No. 3; do., "The Agricultural Depression, 1730~1750,"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ies,, Vol. VIII, No. 3, 1956; do., "The Size of Farms in the Eighteenth Century,"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ies, Vol.XIV No. 3, 1962.

收 £ 1,000 乃至 £ 3,000 的 約 3,000 乃至 4,000 家族이 있으며 그들은 若干의 騎士를 包含해서 主로 地方의 스콰이어(squire)로 構成되고 있었다. 第 3의 그룹은 £ 300 乃至 £ 1,000 的 年收를 가진 約 20,000 家族이며 그들은 單純한 젠틀맨이었다. 富裕한 젠트리와 스콰이어의 所領은 約 800 萬 에이커로서 總耕地面積의 4 分의 1 乃至 3 分의 1에 達하고 이에 單純한 젠틀맨의 所領을 加하면 그 總面積은 約 2 倍가 되어 全耕地面積의 約 2 分의 1을 젠트리가 所有하고 있는 셈이 된다. 따라서 全體的으로 보면 地主는 18 世紀末에 全耕地面積의 4 分의 3을 所有하고 있었던 것이다.

主로 自由保有農으로 構成되는 自作農은 1790 年에 100 에이커 以上의 土地를 耕作해서 £ 150 乃至 £ 700 的 年收를 올리는 25,000 家族의 上層과 20 乃至 100 에이커의 土地를 耕作해서 £ 30 乃至 £ 300 的 年收를 올리는 75,000 家族의 下層으로 構成되어 있어서 이를 自作農은 全體的으로 全耕地面積의 15 乃至 20%를 占하고 그 平均은 잘 해야 50 에이커였다.

18 世紀의 英國에 있어서 地主層은 安定된 하나의 社會層이 있으며 中央과 地方政治에 있어서는 勿論 社會一般에 있어서 그들이 한 役割은 大陸에 있어서의 그것과 比較해서 매우 獨特한 것이었다. 勿論 地主層은 閉鎖된 社會는 아니며 下層에 있는 者도 所領을 獲得해서 地主層으로 上昇할 수 도 있었다. 從來 이러한 社會의 可動性은 英國社會의 한 特徵으로 看取되고 그 活力과 進取性의 一要因으로서 強調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所領을 獲得하므로 地主層으로 社會의 으로 上昇할 수 있는 者는 極히 少數의 有能하고 野心的의 보다 運 좋은 者에게 限定되고 있었던 것이다. 18 世紀에 있어서는 貴族社會의 上昇을 一層 困難하게 하는 몇 가지 要因이 存在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선 첫째의 理由는 所領購入에 必要한 資金이 莫大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즉 18 世紀中葉에 있어서 中產的 젠트리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約 £ 30,000 의 支出를 必要로 했으며 大地主가 되기 위해서는 實로 £ 10 萬를 넘는 支出이 必要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多額의 資金을 必要로 하는 大所領의 獲得은 短期間에 이루워진 것이 아니라 數世代에 걸친 努力의 結果인 것이 通例이며 또 비록 大土地所有者的 地位에 達했다고 해도 그들 모두가 稱號를 獲得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18 世紀의 英國에 있어서 小庇特(the younger Pitt)時代 以前에는 稱號의 賣買도 없고 貴族의大幅增加도 없었기 때문에 新貴族의 大部分은 勳功의 有能한 軍人 稱號를 所有하고 있는 地主의 次·三男 그리고 아일랜드(Ireland) 貴族이었다. 따라서 英國의 貴族은 매우 閉鎖的인 層이며 排他的인 傾向마저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둘째의 理由는 當時의 政治的條件——國內의 安定과 國王權力의 制限——과 經濟的 安定이다. 즉 國王은 任意로 新貴族을 創出하지는 못하게 되고 또 既成 地主는 土地의 賣却을 極度로 싫어했으며 더구나 家族繼承의 不動產處分(family settlement)

所領信託(trust) 그리고 抵當設定에 關한 法律의 發達은 그들로 하여금 長期에 걸친 所領維持를 容易하게 했던 것이다.

所領賣却의 制約土地의 高價 그리고 國王에 의한 所領讓渡機會의 減少 등이 所領獲得에 對한 重要한 障害였던 時期에 있어서 所領을 獲得해서 地主層으로 上昇하는 길은 結婚이었다. 結婚에 의한 새로운 家族關係의 創出과 所領의 獲得이야말로當時의 地主社會에 可動性을 賦與한 큰 要因이었던 것이다. 浪費라든가 不運으로 말미아마 困窮해진 土地所有者는 莫大한 持參金을 가진 商人 金融業者 富裕한 自由職業人の 땅 이라든가 未亡人과의 結婚에 의해서 外部로부터 富를 吸收하고 他面 그들에게 빛나는 稱號를 贈與해서 上流社會에 迎入했던 것이다. 따라서 土地所有者層의 外部에서 보면 땅은 貴族과의 結婚에 의해서 一家의 地位와 緣故關係를 높일 수 있는 手段이며 土地所有者層의 内部에서 보면 땅은 一家가 富를 蓄積하고 政治的關心을 높이고 影響力を 強하게 하기 위한 媒介者이었다. 또 持參金이 地主社會內部에서의 富의 移轉이라면 어느 家族의 上昇은 다른 家族의 衰退의 機會이기도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 以前에 있어서와 같이 18 世紀에 있어서는 政治的 經濟的 그리고 社會的權力의 基礎로서의 土地의 重要性 地主의 所領擴大欲 地主以外의 者의 大地主와의 結緣欲이 들 모두가 上流社會에 있어서의 結婚의 商業的側面을 強化시키는 傾向을 가졌던 것이다. 結婚의 協定을 맺을 때에는 다른 動機보다도 物質的側面이 重要視되고 持參金 寡婦產 용돈(pinmoney) 分與產 所領信託 殘餘權 등에 關한 複雜한 規定을 가진 結婚協定이 家族關係를 支配했던 것이다. 充分한 持參金을 가진 都市의 富裕한 商工業者의 땅은 土地所有者에게는 注目的 對象이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土地를 獲得한 大地主들의 最大의 關心은 新·舊 어느쪽에 있어서도 그 社會的地位를 向上시키고 領有를 確保하는데 있었다. 그때문에 財產相續과 子女 특히 長子의 結婚은 注意깊게 規制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즉 結婚은 보다 큰 富와 土地와 影響力を 招來할 수 있도록 協定되고 相續人の 權利는 浪費라든가 愚行으로 말미아마 富가 危險하게 되지 않도록 制限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實現하기 위한 法律上의 方案이 限嗣相續制이며 相續者는 所領의 所有權 名儀뿐이며 實은 生涯權者에 不過하다는 制度이다. 즉 相續者는 그의 生存期間만 所領을 合法的으로 讓渡할 수 있으나 所領을 賣却할 수는 없고 一定한 面積과 特定目的을 위해서 所領의 抵當設定權을 가졌음에 不過했다. 1660 年으로부터 18 世紀中葉까지 增大한 限嗣相續의 慣行은 嚴格繼承의 不動產處分(strict settlement)에 의해서 行해지고 이것이 地主의 土地財產과 그 地位의 長期的維持를 保證하는 方法이 되었던 것이다.

限嗣相續의 重要性은 家族繼承의 不動產處分에서 이루워진 財政上의 協定에 의해서 높

하였다. 持參金調達을 위한 抵當設定에 附加해서 土地賦課金 寡婦產年金 및 贈與 分與產은 무거운 負債의 原因이기도 했다. 따라서 連다른 相續과 子女의 多產은 가끔 家族의 財政狀態를 困難케하고 그 結果 議會의 法律에 의해서 家族繼承的不動產處分을 解除하여 土地를 賣却하므로서 負債를 輕減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게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家族繼承的不動產處分이 所領解體의 沮止에 成功한限 그것은 土地賣却을 制約하는 要素이며 따라서 新參者가 地主階級에 들어가는 機會를 制約한 것이다. 더우기 17世紀末이 되면 抵當設定에 의해서 土地를 襲失할 危險이 減少했기 때문에 土地를 賣却하지 않아도 抵當設定에 의해서 必要한 金額을 調達할 수가 있게 되었다. 抵當設定의 魅力은 資本市場의 發達과 利子率의 低下에 의해서 커지고 土地所有者가 資金을 調達하는 典型的인 方法의 하나가 되었다.

以上과 같은 諸條件에 의하여 18世紀 英國의 地主社會는 安定을 享受하고 있었다. 따라서 地主가 衰退하는 蓋然的原因은 政治體制의 變化라든가 刑罰에 의한 没收라든가 重稅라든가가 아니라 浪費에 있었던 것이다. 18世紀에 있어서는 個人的消費 子弟教育 建築 娛樂 스포츠(sports) 選舉費用이 加重되고 獵園이라든가 庭園의 造設 豐富한 分與產이라든가 寡婦產의 設定이 地主階級에게 무거운 負債를 지게하고 있었던 것이며 若干의 境遇에는 그 負債가 危機를 招來할 때도 있었다. 그러한 境遇에는 不意의 事態에 對處하기 위한 例外的方策이였기는 했으나 節約과 能率的인 管理를 強制하므로서 負債를 清算하기 위해서 所領이 一定期間 管財人の 손에 移讓되었다. 이 境遇에도 土地의 賣却은 되도록이면 回避되었던 것이며 그래도 結局 할 수 없을 때에는 邊境地라든가 가장 價值가 적은 土地라든가를 賣却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나 限嗣相續을 解除하기 위해서 議會의 特別法에 呼訴하는 것은 最後의 手段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地主가 負債를 지는 것은 普通이었으나 負債에 의해서 存立이 危태롭게 된 地主는 18世紀에는 稀少했다. 18世紀 특히 그 後半에 있어서는 地主는 그 收入을 增大하고 그 影響力を 一層 強化하였던 것이다.

III. 農村構造의 變化와 大所領의 成長

17世紀末부터 18世紀前半에 이르기까지의 約百年間은 英國의 農業構造에 있어서 顯著한 變化를 經驗한 時期였다. 이 時期에 大土地所有者는 小土地所有者를 犠牲으로해서 所領을 擴大하고 富裕한 젠트리는 一般的으로 自己의 地位를 確保할 수 있었다. 他面 小센트리와 自作農은 數的으로 減少해서 그들의 多數는 都市의 商人이라든가 自由職業人에 의해서 代替되고 그들의 土地도相當程度까지 大地主의 所領에 吸收된 것 이었다.

이 時期에 있어서 大所領을 成長시킨 要因으로서는 두 가지를 들수가 있다. 첫째 大土地所有者는 專門的인 土地管理人을 雇庸하고 高度로 集中化된 能率的인 所領管理技術과 嚴密한 會計方法을 導入하므로서 所領의 經濟的利益을 높일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려한 것이 곧 小土地所有者를 牺牲으로해서 大所領을 擴大시킨 것은 아니다. 그 理由는 土地管理人은 언제나 正直하고 信賴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많은 所領이 分散되어 있었으므로 管理와 改良이 不充分하게 밖에 이루워지지 않고 또 地主의 政治的 社會的 配慮와 많은 慣習의 殘存에 의해서 有効한 所領管理가 가끔 制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注意 깊은 所領의 經營과 開發에 의해서 所領收入을 크게 改善한 Ashburnham 家와 같은 若干의例外를 除外하면 大所領의 生成과 維持와의 主要因은 結婚과 相續에 있었던 것이며 이 점에 있어서 大地主는 ジェント리보다도 훨씬 有利한 地位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全體的으로 보아서 大所領은 規模의 經濟의 利益을 얻었던 것이며 小所領보다는 有利하게 經營되었던 것이 事實이다.

둘째로 大土地所有者는 所領開發에 資本을 提供할 수 있는 有力하고 多樣한 資金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이것이 그들 大土地所有者로 하여금 財政窮乏期와 地代低下의 影響에 對處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그 主要한 것은 官職 年金 閑職 大使職 總督職 司令官職等으로부터의 收入이었다. 一般的으로 말해서 小土地所有者와 比較한 境遇의 大地主의 大經濟力은 規模의 經濟富를 招來하는 結婚 收入源의 多樣性 官職과 年金에의 接近 그리고 18世紀後半이되면 大所領에 있어서의 多樣한 所領開發의 機會로부터 나타난 것 이었다.

17世紀末로부터 18世紀前半에 걸쳐서의 小土地所有者의 地位는 困難한 것 이었다. 그들은 大土地所有者가 가지는 經濟的 利點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8世紀 特히 그前半의 農業狀態가 그들에게는 매우 不利하게 作用했던 것이다. 17世紀末과 1709~10年 1727~30年 그리고 1740~1年에는 家畜의 痘疫 旱魃 酷寒 봄철이 늦음으로 因해서 泰난트(tenant)는 많은 家畜을 잃고 Midland의 牧畜地帶와 Cheshire 와 Wiltshire 北部와 같은 酪農地帶에서는 1745年に 發生해서 그 後 10年間 繼續된 家畜의 瘦病으로 말미암아 異例의 으로 많은 家畜을 잃었던 것이다. 또 農業經營者는 1700年代初葉 1720年代中葉 1730年代와 40年代中葉에 農產物價格의 顯著한 低下에 의해서 影響을 받았다. 18世紀前半에 있어서의 地代上昇은 매우 緩慢해서 凶作 家畜의 瘦病 그리고 異例의 低價格의 해에는 地代의 滯納과 地代의 消滅이 急速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 影響은 地方에 따라 그리고 經營內容에 따라 相異했다. 30年代와 40年代初頭의 低價格은 重粘土地의 Midland 地帶에 特히 큰 打擊을 주었던 것이 있으나 東部의 輕土壤地帶에서는 新穀草式農法(convertible husbandry)이 進展하여 穀物生產者는 生產增大 費用의 輕減 市場條件에 의한 輪作(rotation of crops)의 調整에 의해서 低價格의 影響에 對處할 수 있었다. 全般的으로 牧畜經營者는 보다 有利한 條件의 恵澤을 받고 있었다. 肉類價格은 1730年頃까지 매우 安定되어 있고 獸脂와 같은 2次製品의 需要는 上昇하고 있었다. 그래서 牛肉 羊肉 獸脂 바터(butter) 치이스(cheese) 그리고 羊毛는 모두 1730年代初頭에는 下落했으나 30年代後半과 40年代

初頭에는 回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諸條件이 所領收入에 미치는 影響은 勿論 그 地理的條件과 테 난트의 能率에 依存하고 있었다. 1730 年까지에는 廣範한 地域에서 地代의 滯納이 있었으나 若干의 所領에서는 地代가 15~40% 上昇하고 비록一般的으로는 成功하지 않았으나 若干의 地主는 地租負擔을 테 난트에 轉嫁할 수도 있었다. 또 穀物獎勵金에 의한 輸出振興과 穀價引上傾向도 地主에게는 有利했다. 他面 地代의 減少를 經驗한 地主는 既存의 테 난트의 維持와 새로운 테 난트의 誘致를 위해서 農業改良에 보다 많은 支出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8 世紀後半의 農業狀態는 보다 良好한 趨勢에 있었다. 1750 年代와 60 年代의 몇몇 地域에 있어서의 貧窮은 1779~80 年 사이에 있어서 急激하기는 하나 短期의 價格下落을 論外로 한다면 農業繁榮이繼續되고 農業經營者의 利益은 堅實하게 높아졌다. 1760 年代末에는 經濟趨勢는 明白히 地主側에게 有利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急速한 人口增加와 工業化에 따른 需要增大는 이 時期의 平年作乃至 그 以下の 收穫으로 말미아마 需要에 對한 農產物供給의 遷滯를 生起시켜 價格의 騰貴를 招來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好況에 對應해서 인클로주어가 活潑히 進行되고 穀物法이 修正되어 아일랜드로부터의 家畜生產物의 自由輸入이 許容되었던 것이다. 1790 年까지에는 地代는 40~50% 上昇하고 地代의 滯納도 減少되어서 地主는 農場 維持費의 相當部分을 때로는 테 난트에 轉嫁할 수도 있었다. 또 地代收入만이 아니라 石炭 鐵 亞鉛鑄 鐵工業 石灰窯 煉瓦窯 採石場 木材로부터의 地主의 收入도 急速히 上昇했다. 이러한 趨勢는 1793 年의 戰爭勃發以後 더욱 強化되었다.

이러한 時期에 있어서 小土地所有者가 直面한 一般的인 困難은 그들의 土地가 有利한 農業經營을 行할 機會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地域 土壤 그리고 市場에 關한 條件이 좋지 않은 限 그들의 農業生產에는 伸縮性이 없고 長期의 價格變動이라든가 종종있는 凶作이라든가 家畜의 疫病等의 原因으로 多數의 小土地所有者는 土地를 賣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그들의 限定된 收入源 戰時課稅 名譽職에 隨伴되는 支出 富裕한 商工業者와의 結緣의 困難이 모두가 小土地所有者의 經濟狀態에 不利했었다고 생각된다. 또 18 世紀初頭에 地代收入 £ 1 當 4s.의 率로 徵收된 地租에 의해서 特히 東南諸州의 小센트리는 苦境에 빠지고 地代以外에 收入源을 가진 富裕한 젠트리마저 이 地域에서는相當히 큰 打擊을 받았던 것 이었다. 18 世紀後半에는 地租의 實質負擔額은 東南諸州以外에서는 地代의 約 10%로 下落했던 것이므로 地租負擔과 價格變動의 影響이 強力히 感知된 것은 18 世紀前半이었고 稱號라든가 社會的地位라든가 政治的責任이라든가가 收入에 比較해서 過大한 것으로 되어온 大多數의 小센트리는 債務에 苦惱하고 没落에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一般的으로 18 世紀의 農業狀態는 自由保有農보다도 테 난트에 의해서 占有되는 大農場에

有利했다. 人口增加와 商工業의 發達에 의한 農產物市場의 擴大는 進取的인 農業技術을 採用한 大規模農業經營을 有利하게 했던 것이다며 大自作農은 進步的農業經營者와 같이 從來보다도 더 많은 土地를 購入 또는 賃借하므로서 經營을 擴大했던 것이다. 17世紀後半으로부터 18世紀前半에 걸쳐서 普及한 根菜作物 栽培牧草 레이(lay) 條播機 規則的인 馬力耕作 除草 多量의 施肥를 包含하는 集約農法의 普及은 必然的으로 大農場의 形成을 促進했던 것이다. 그러나 集約農法의 普及은 自然的條件이 그에 適合하고 且 交通의 便이 그에 有利한 곳에서 볼 수 있었고 또 그것은 가끔 생각되어 온 바와 같이 勞動力を 節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勞動력을 必要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農業技術의 進步가 農業構造에 주 영향은 普通 생각되는 것보다는 限定된 것이었다. 農業構造에 重大한 影響을 미친 것은 技術의 進步라기보다도 農場의 統合이라든가 인클로주어였던 것이다.

18世紀後半의 農業繁榮은 大規模生產者에게 有利했을 뿐만 아니라 特히 酪農·牧畜地帶에서는 小生產者에게도 有利했다. 荒蕪地(waste)라든가 共同地(common)의 開墾에 의한 耕地의 創出若干의 富裕한 自由保有農의 分割相續 不在地主로부터의 土地購入등에 의해서 自作農이 增加하는 傾向도 있었다. 즉 18世紀 全般을 通해서 自由保有農의 急激한 減少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激甚한 衰退가 나타난 것은 17世紀末로부터 18世紀前半에 걸쳐서의 一般的의 不況期에 있어서였던 것이다 18世紀後半에는 그들의 地位는 安定되고 나폴레옹(Napoleon) 戰爭의 時期에는 그 數가 相當히 增加했던 것이다. 自由保有農衰退의 決定的인 要因은 18世紀前半과 1812年以後에 있어서의 農產物價格의 低下에 있었던 것이다.

Habakkuk 教授는 18世紀初頭에 있어서의 小土地所有者衰退의 原因으로서 戰時稅 地主에 의한 農場의 統合과 大農業經營者에의 一括貸付 謄本保有(copyhold)와 生涯借地保有農場의 摧出地代를 隨伴하는 1年乃至 數年契約 定期借地에의 轉換을 들고 있다. 18世紀後半의 議會인클로주어의 結果에 關해서는 Marx 라든가 Engels를 비롯해서 從來 많은 學者에 의해서 誤解乃至 誇張되고 있는 것이며 小土地所有者數의 減少를 招來한 것은 오히려 18世紀前半의 協定에 의한 인클로주어였다는 것이 看過되고 있다. 18世紀前半에는 開放耕地村落에 있어서 마저 保有地의 再編成과 斷片的인클로주어가 行해졌던 것이며 이 過程에 있어서 大農場의 形成과 小土地所有者의 衰退傾向이 나타났던 것이다. 最近의 詳細한 研究에 의하면 議會인클로주어는 많은 境遇에 自由保有農數에도 農場規模에도 거의 影響을 끼치지 않았고 小自由保有農이 實際에는 增加하고 있다. 인클로주어를 行하는데 있어서 小自由保有農에게는 安定과 衰退의 兩面이 있었다는 것은 當然히 생각할 수 있으며 그 程度는 地方的條件에 依存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클로주어自體가 18世紀後半의 農業繁榮期에 있어서의 小自由保有農衰退의 主原因이었다는 證據는 없다. 18世紀에 있어서의 小自作農의 衰退는 顯著하나 그것은 前半의 低價格 自然的災害

인클로주어 그리고 大農場形成의 傾向에 의한 것 이었으며 議會인클로주어에 의해서는 오히려 自作農의 增加가 나타났다고 까지 생각되는 것이다.

IV. 農業改良에 있어서의 地主層의 役割

18世紀英國의 農業改良에 있어서 大地主가 다한 役割에 關해서는 從來 積極的인 評價가 行해져왔다. 例를 들면 Coke, Townshend, Bedford公 Egremont家 Rockingham家 其他의 많은 大地主들이 模範農場을 가지고 作物 農具 그리고 家畜品種의 改良實驗을 하므로서 農業改良의 先驅者로서 매우 重大한 役割을 다했다고 생각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大地主의 改良例는 Arthur Young라는가 William Marshall을 비롯하여 當時의 農業專門家들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典型的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例外에서 農業技術의 番다운 變革者는 地方전통엔 大自作農 그리고 富裕한 農業經營者였다. 大地主들의 主要한 關心은 所領管理와 그로부터 引出되는 地代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農場이 라든가 施設의 改善에 資本을 投下한것도 地代收入을 增大하고 테 난트에 不滿을 주지 않고 所領管理에 黑字를 내는데에 그目的이 있었던 것이다. 大地主가 가지는 自營農場은 많은 境遇에 自家用農產物生產을 위한 것이며 또 오히려 赤字經營이었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農業經營에의 直接參加를 躍躇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改良農業의 普及에 對해서 大地主의 自營農場이 가진 役割은 力引해서 생각되어야하며 그것보다도 오히려 18世紀後半에 若干의 大地主에 의해서 主催된 農業展覽會라는 農業協會의 影響力이 注目되어야 할 것이다.

또 農業改良에 크게 貢獻했다고 생각되고 있는 農業方法을 嚴密히 規定한 長期賃貸借契約도 諸條件의 特殊한 農業經營을 要求하는 境遇에는 18世紀初頭에 벌써 그慣行이 確立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賃貸借契約은 農耕方法에 關해서 언제나 進步的인 契約을 包含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비록 그것을 包含하고 있는 境遇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만큼이나 強制되었는가는 疑問이다. 어떻든 大多數의 賃貸借契約은 테 난트의 不正行爲라든가 慢怠에 의해서 土壤의 肥沃度를 害롭하지 않도록 配慮되고 있었으나 實際의 農耕方法에 關해서는 경우에 따라 全히 記載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借地의 安定性에 關해서는 1年契約의 借地인 境遇에도 그 保有가 不安定한 것이 아니라 實質적으로는 生涯間 그리고 다음 世代에도 同一土地를 利用할 수 있었던 것이며 農業改良에 對해서 長期賃貸借契約이 가지는 意義도 從來 論及되어온 程度만큼 重要한 것은 아니다.

18世紀의 農業改良의 普及에 進步的地主들이 다한 役割은 固定資本과 土地保有의 安定性을 提供한 것이었다. 즉 地主의 主要한 機能은 改良農業의 展開할 수 있는 諸條件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地主의 二次的인 機能은 農業經營者와 經濟變動의 주는 衝擊과의 사

이에 있어서 그 緩衝器로서의役割을 했다는 것이다. 農產物價格이 下落한나든가 家畜이 旱魃과 疾病에 의해서 損害를 입는다든가 收穫物이 日氣不順으로 被害를 입는다든가 할때에는 地主는 地代의 引下와 其他의 方法으로 테 난트의 被害를 輕減하도록 努力했다. 이러한 地主와 테 난트와의 關係는 農業改良의 促進에 매우 効果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地主가 所領을 開發하는 主目的은 地代增收에 있었으나 그 境遇에 所有地의 性質과 位置 그리고 農產物市場의 狀態가 決定的으로 重要했다. 따라서 18世紀에 있어서의 農業改良은 當然히 市場에 有利한 場所에 있는 未耕劃地 또는 未開發地를 가지고 있던 地主들間에서 顯著히 이루워지고 또 인클로주어라든가 그밖의 改良一般은 價格이 上昇한 18世紀後半에 더욱 活潑해지고 廣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Norfolk 는 그 一例이다. 大所領의 經營은 專門的인 所領管理人에 의해서 行해졌으나 18世紀中에 그들이 한층 職業的으로 되고 集中化된 管理가 効果的으로 됨에 따라 經營水準은 改善되었다. 所領管理人은 所領經營全般을 統轄하는 重要한 責任을 가지고 會計監查 土地改良計劃 施設修理의 裁可 土地의 賃貸契約 賣買등을 맡아보았다. 若干의 進步的管理人이 新農法의 實驗을 試行하는 일은 있었으나 農業技術의 改良에 對해서는 그들은一般的으로 保守的인 傾向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多數는 實際의 農業經營者이며 農業技術에 있어서의 專門家이기도 해서 때로는 테 난트의 農業經營을 指導하고 非公式的인 助言을 하므로서 農業技術의 改良에 貢獻하고 한편 農業經營이 特히 非能率的인 곳에서는 인클로주어 保有地의 再編成 建物의 改善 其他의 方法으로 農業改良을 위한 努力を 하고 있다. 그러나 大所領의 效果的인 開發이 無限히 行해진 것은 아니다. 不充分한 資金源이라든가 程度의 差는 있으면서도 嚴格한 家族繼承的不動產處分의 效果에 의해서 開發이 相當程度妨害되는 例도 決코 적지는 않았던 것이다.

地主의 土地改良을 위한 投資額은 當然히 農業經營의 型 土地의 性質 그리고 地方的事情에 의해서 差異가 있었다. 栅이라든가 農場建築物에 附加해서 地主는 인클로주어 荒蕪地의 開墾 河川의 堤防 排水 土壤改良과 같은 永久의 改良의 資金供給을 할 것으로 期待되었으며 이와 같은 投資로 얻은 利益은 特히 農場改良의 餘地가 充分히 있었던 18世紀에 있어서는 土地의 新規購入으로 얻어지는 利益보다도 높았던 것 같다. 輕土壤의 Norfolk에서는 高價한 泥灰土施肥가 基本的인 改良事業이었으므로 投資額도 크고 進步的인 Holkham 所領에서는 投資額은 總地代收入의 11~21%였다. 그러나 이것은 平均보다도 월씬 높은 投資率이며 Bedford 公이 1732年에 8%를 修理와 改良에 支出했다던가 Kingston 公이 18世紀의 大部分을 通해서 1~5%를 支出했다던가가一般的인 率이었을 것이다.

以上과 같은 投資는 勿論 所領에 對한 地主의 個人的關心의 強弱에도 依存했으나 더욱

經濟變動에 의해서도 影響을 받았던 것이다. 例를 들면 18 世紀前半의 不況期에 많은 所領에서 支出이 매우 增大하고 있다. Kingston, Monson 其他의 所領에서 支出이 增大한 것은 不況期에 테 난트를 誘致 確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他面 18 世紀後半의 好況期에 있어서는 이러한 種類의 支出은 大部分 테 난트가 負擔하게 되고 있으며 地主는 明白히 好況期에 있어서 보다도 不況期에 보다 热心히 改良을 하고 있다. 또 農業投資額의 增減과 長期의 公債利子率의 高低와의 사이에는 매우 密接한 關係가 發見된다. 投資가 盛行된 1730 年과 40 年代는 低利率의 時期였다. 또 18 世紀後半에는 高利率의 時期에 인클로주어 法案의 減少가 나타나고 反對로 利率이 低下하면 增加한 것이다.

開放耕地(open field) 共同地(common) 그리고 荒蕪地의 인클로주어는 18 世紀의 農業發展에 對해서 土地所有者가 行한 主要한 資本投資이며 基本的인 貢獻이었다. 인클로주어의 目的是 開放耕地의 生產性을 높임과 同時に 共同地라든가 荒蕪地를 耕地에 編入하므로서 單位面積當의 生產高와 總生產高를 높일려는 것이다. 이것은 18 世紀後半에 急速히 增加한 人口에 대하여 食料를 供給하고 擴大된 工業生產에 原料를 供給하는 것을 可能하게 한 主要因이었던 것이다. 地主側에서 보면 인클로주어의 經濟的效果는 커다. 18 世紀後半의 인클로주어에 의해서 地代가 3~4 倍나 上昇한 것은 例外의이라고해도 平均해서 約 2 倍의 上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에 인클로주어 費用을 1 에이커當 30 s.으로 보면 7~10 s.의 地代가 15~20 s.으로되어 支出의 約 30%에 達하는 利益을 올리고 있다. 이것은 土地購入이라든가 國債라든가에 投資된 金額으로 純收益의 5~6 倍에相當하며 道路建設이라든가 建築物建築이라든가의 費用을 包含해서 1 에이커當 50~60 s.의 費用을 인클로주어에 投入했다고 해도 15~20%의 收益이 되므로 投資로서의 인클로주어가 매우 有利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他面에 있어서 小土地所有者的 衰退는 인클로주어가 반드시 그 原因은 아니었다. 인클로주어는 恒常 그들의 利益에 反해서 行해진 것은 아니며 그들이 모두 그에 反對한 것도 아니다. 인클로주어에 의해서 모든 小農이 没落한 것은 아니며 비록 그들의 數的減少를 招來하는 結果를 낳았다고해도 그것은 多年에 걸쳐서 進行되어온 過程의 speed를 빠르게 했다는데 不過했다. 더욱 인클로주어는 小農으로부터 共同耕地라든가 共同地를 無償으로 奪取한 것은 아니었다. 또 充分한 資本을 가진 農業經營者的 存在가 稀少했다는 事情은 土地統合의 傾向을 制約한 것이며 土壤과 市場條件이 有利한 곳에서는 小農業經營者는 繁榮하고 增加했던 것이어서 19 世紀前半에 있어서도 그들은 全農業經營者の 約 半을 차지하고 있다. 農村에 있어서의 勞動人口의 運命에 미친 인클로주어의 影響에 關해서도 從來의 通說에는 再考의 餘地가 있을 것이다. 農村의 無產勞動者の 發生을 인클로주어의 結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오히려 인클로주어는 耕地의 擴大와 turnip 과 豆類 같은 多量

의 労動力投下를 必要로하는 作物栽培를 擴大하므로서 雇傭을 크게 增大시킨 것이었다. 農業雇傭이 增大해도 아직도 工業에 吸收될 労動力의 剩餘를 創出한 것은 人口의 急增이 었던 것이다.

인클로쥬어가 英國의 農業構造에 決定的인 變化를 일으켰다는 것은 否定할 수 없으나 그것은 從來 생각되어 온 것보다도 漸次的인 過程이며 그 效果도 限定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農業技術에 對해서도 從來 생각되어 온 바와 같이 革命的인 影響을 준 것은 아니다. 그 理由는 一部는 開放耕地農業이 從來 普通 생각되어온 바 보다도 伸縮性이 있고 進步的인 것이어서 大農場經營이라든가 새로운 型의 輪作도 그 테두리안에서 出現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一部는 若干의 重土壤地帶에서는 1840 年代에 安價한 暗渠排水가 可能하게 될때까지 傳統的農法을 完全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1750 年으로부터 1815 年에 이르기까지의 廣範한 인클로쥬어는 速度와 強度만은 相異했으나 中世以來 進行되어 온 發展에 加速度를 준것이며 1760 年以來의 急速한 需要增大와 農產物價格의 繼續的上昇과를 그 直接的인 動機로 하는 것이다. 이 時期의 ھ센 以前부터 大所領의 漸次的增大 小自由保有農地의 減少 그리고 農業技術의 改良에 의해서 大인클로쥬어의 基礎가 準備되고 있었던 것이며 所謂 第2次 인클로쥬어 運動은 이들의 過程을 더욱 促進시킨데 不過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8 世紀英國의 農業發展에 對한 地主의 貢獻은 一般的으로 工業發展에 對한 地主의 그 것과 같이⁽⁴⁾ 農業技術의 推進者로서의 그들의 活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農業技術의 進步를 위해서 必要한 基本的諸條件를 만들어 냈다는데에 있었던 것이다.

(4) 地主의 所領開發은 農業의側面만이 아니라 各種의 鎳山 採石場 石灰窯 煉瓦窯와 같은 非農業의側面도 包含하고 한가롭 나아가 그들의 利益追求心은 所領開發의 範圍를 넘어서 여러 가지 事業에까지 미치고 있다. 例를 들면 Chandoes 公은 建築 眞珠養殖 各種礦山 不動產 유리 위스키 비누製造 株式投資 貴金屬去來 劇場에까지 손을 벌리고 있고 Cumberland 의 Lowther 家는 都市의 擴張 潘灣의 改良 炭坑의 開鑿에 £ 50 萬에 達하는 投資를 하고 있다. 그러나 18 世紀의 工業發展에 對해서 地主가 한 決定的으로 重要한 貢獻은 有料道路리본가 運河의 建設에 莫大한 資本을 그들이 投下했다는 點이다. 한 社會의 工業化를 위한 先行條件으로서 決定的으로 重要하며 現今 低開發國에 있어서는 그 建設이 政府의 役割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社會의間接投資의 一部를 英國의 產業革命期에 있어서는 地主들이 擔當하였던 것이다.

<Summary>

Landlord and Farming in the Eighteenth-Century England

*Jong-Hyun Kim**

1. Hitherto, studies on the agricultural revolution have been concentrated in the period of the second half of the eighteenth and early nineteenth centuries, while full attention has not always been paid to the early part of the eighteenth century. However, after Prof. Habakkuk's work on English landownership, the significance which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has in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has come to be regarded as important; and there has been a growing prevalence of the opinion that the agricultural revolution was a long process ranging at least from the later seventeenth century to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and that the parliamentary enclosure worked only as an accelerator of this process.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rapid changes in agricultural structure and the progress of farming technique, usually attributed to the parliamentary enclosure, began to take place at least in the later seventeenth century, and that factor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e eighteenth century are price-fluctuations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 products, and that the growth of population, market and estate before the parliamentary enclosure has an important significance, and that the high evaluation in the past of famous landlords subject to revision.

In this paper, it i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Dr. Mingay's recent works, intended to survey on the structure of landlords, the growth of their estates, and their functions on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e eighteenth century England.

2. In the eighteenth century England, the landowners, viewed in respect of their social status and political functions, consist of three broad categories of peers, gentries and freeholders; and reviewed in respect of their economic functions, they consist of more clearer categories, landlords and owner-occupiers.

By the second half of the eighteenth century, English landlords formed a

* Instructor of Economic History, College of Comme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Member of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stable society and they played a fairly unique role in politics and society in general. Indeed, English landlords were not a exclusively closed society but had some social mobilities, which were regarded as a characteristic of the English society. However, the mobilities had their limits so that it was difficult to rise into the landed class by acquiring estates. This fact resulted from the reasons that a large sum of fund was needed for purchasing estates, and that the political condition and the economic stability in those days were unfavourable to creation of new landed families.

Therefore, the main path to rise into the landed class by acquiring estates necessarily lays through marriage. A wealthy townsman who made a fortune mainly in the business world married with landed class. Because it was a means by which he could advance to the landed class, while for the landed class, marriage was a means by which they could accumulate wealth, cement political alliances, and extended their influences. Thus, main concerns of a great landlord who acquired estates were in the advancement of his social status and the security of his estates. The legal device to achieve it was the entail and the entail was practiced through strict settlements which became a means to ensure the long-term security of estates and status of landed families.

Under the conditions mentioned above, English landed society in the eighteenth century maintained stability, and especially in the second half of the eighteenth century, increased their income and further strengthened their influences.

3. The late seventeenth and the early eighteenth centuries were a period of remarkable changes in the English agricultural structure. In this period, great landowners extended their estates at the cost of small landowners, and wealthy gentries could ensure in general their position, while small gentries and owner-occupiers decreased in number and their lands were considerably absorbed into large estates.

In general, it seems that the growth of large estates was achieved partly through their ability to enjoy the profit derived from the economies of scale, and partly through the greater diversity of great landlords' sources of income which they could put into the development of their estates. On the other hand during this period, the conditions of small landowners in general were straitened, because they could neither enjoy economic advantages like the great landowners,

nor were the agricultural conditions especially in the first half of the eighteenth century favourable to them. The general difficulties of small landowners in the second half of the eighteenth century during which agricultural conditions were more favourable were due to the fact that they never could have an opportunity to make their farming more profitable on their own farms.

Thus agricultural conditions in the eighteenth century favoured to great landlords and tenant-farmers on the one hand, while they reduced small landowners to straitened circumstances. However, the rapid decline of the later took place rather during the period of general depression in the late seventeenth and early eighteenth centuries than in the period of the parliamentary enclosure. Therefore, the main factors of their decline, contrary to prevailing opinion, were not the parliamentary enclosure, but low prices, natural disasters, enclosures, and the growth of large farms, especially in the first half of the eighteenth century.

4. Hitherto, the role which great landlords played in the improvement of English farming in the eighteenth century has been overestimated. However, contributions of improving landlords consist less in improvement of farming technique and granting of long leases with strict husbandry covenants than in supply of fixed capital and ensuring of the security of holdings. Indeed, fundamental contributions of landlords to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e eighteenth century were the investment of capital and enclosures of open fields, commons, and wastes.

Enclosure was a less drastic process than used to be supposed in the past, and its effects were limited, too. Consequently, enclosure was not necessarily the cause of decline of small landowners. The parliamentary enclosure only accelerated the already proceeding process of agricultural evolution.

The contribution of landlords to the English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e eighteenth century was, in general, like that of landlords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it did not lay in their action as promoters of farming technique but in the creation of fundamental conditions needed for the progress of farming technique.